

우리는 80년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 일시 : 2001년 9월 28일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기독교회관 510호)  
전화 : (02) 765-4126 (H·P : 016-225-3903)  
FAX : (02) 747-3385  
E-mail : samchung21@hanmir.com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

#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 일시 : 2001년 9월 28일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

## 개 회 사

먼저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토론회의 기조발표와 토론회,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대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과 전국각지에서 오신 삼인련회원 여러분께 그 관심과 성의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토론회는 삼청교육의 불법성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을 위한 조속한 특별법제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경과보고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단체가 결성된지 올해로 13년이 되었고, 1980년 삼청학살 만행 발발 당시부터는 21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13대 14대 15대 국회 10여년 세월동안 제출된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특별법”을 장기 계류 시키다가 마지막에 폐기시키는 과정을 3회나 겪었습니다.

1980년 전두환 군부독재가 정권유지를 위하여 사회정화라는 미명으로 멀쩡한 국민들을 마구잡이 끌어다가 재판도 하지 않고, 범법자로 만들어 혹독한 공수군인들의 군화발길과 몽둥이질, 총살로 인해 사망하거나 나와서 정신이상, 실물인간 등이 되었고, 각종 장애자가 된 사상 유래 없는 행위로서, 이 엄청난 인권유린 사건을 관심도 없고 본체도 않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태반이나 되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입니다.

나라를 걱정하시는 사회인사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나라가 초대 이승만정권 당시 친일파 청산을 못하여 민주주의가 조속히 발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삼청교육대특별법’ 제정 이야기로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다행이 지난 김영삼 문민정부 당시 우리회원이 민사소송을 내어 대법

원이 기각판결로 처리 하였던 것이, 지난 7월10일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 대법원이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리므로 인하여, 이제 우리 회원 일동은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단체가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집권여당 새천년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신 한화갑의원외 여야의원 12명의 소개의원 서명날인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여 현재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시행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토론회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검토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2001년 9월 28일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회장 전영순

## 격려사

오-랜 세월 한맺힌 억울함과 육신의 아픔, 생활의 고난속에 오늘날까지 참아주신 삼청교육대피해자 여러분의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인권유린을 방치하거나 군부독재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는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고통을 담습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우리가 바라는 민족의 화합 또한 진정한 자유, 평등, 평화 그리고 균형있는 발전과 민족의 통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청교육대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특별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협력하여 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피해국민의 아픔을 치료해야 할 것입니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 특별법 제정에 솔선 수범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 특별법제정에 뜻을 같이하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열린 토론을 통해 촉매제가 되어, 삼청교육대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국민인권유린과 국민화합의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정권교체 이후 국민의 정부는 과거정권에서 할수 없었던 수많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IMF 외환위기 극복에 성공하였고, 지식정보화 시대 대비, 사회 안전망의 확충, 남북화해협력의 기반 마련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도 경제회복과 4대 부문 개혁의 결실을 맺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6공당시 삼청교육대 피해보상을 위해 여러모로 협력하였고, 1988년 12월 3일에는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피해자 1,000여명이 모

인 대회를 주최하여 성황을 이룬 결과 노태우 전 대통령 담화문과 오자복 전 국방부장관의 담화문을 받아내는 결실을 맺게 하였습니다.

또한 1992년 대선 당시에는 김대중 총재가 당선되어 집권하면 5공당 시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실시할 것을 정책으로 공약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집권후 IMF 외환위기가 닥쳐서 그 해 11월 17일 당선된 그날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였고, 50년 묵은 개혁을 이루기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야당도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가 협력하여 이 특별법 제정에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신 전영순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회장 및 공동의장 여러분과 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참석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우리연구소에 참여해 주셨던 교수님과 수석연구원 여러분은 물론  
각사합니다.

새천년민주당 최고의원

## 국회의원 학화갑

전보배달국

서울시 연건동 128-9  
서울전신국 전신과  
110-460 17:138 0652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510 심경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영순 대표님 귀하

1 1 0 - 1 7 0

발신국:서울 서울 130|1291740406 09/17 17:00  
경(국회2):84 138 - 0652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510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수신인 : 전영숙 대표님 귀하

광기의 역사는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세월 안에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김근태

전 보 배 달 국  
서울시 연건동 128-9  
서울전신국 전신과  
110-460 28:138 0342

# 결의문

1. 우리는 지난 13대, 14대, 15대 국회에서 "삼청교육대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 일보직전에 폐기된 사건을 중시한다. 이에 자동폐기를 유도하고도 현재 16대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당사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인권유린을 방조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2. 우리는 현재의 국민의 정부가 인권을 중시한다면 1992년 대선 당시 야당시절 만민앞에 공약한 삼청교육대 피해배상 공약서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 한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는 정치인들이 계획적으로 국민을 인권유린, 학살된 사건을 규정하여 국제사법재판에 회부하고, 세계 인권단체에 그 죄상을 고발할 것이다.
  3. 우리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5공화국의 뿌리를 같이하였음을 제삼 상기한다.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지위와 책임을 통감하여 특별법제정을 즉각 이행하라.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5공당시 범법을 주도하고 한나라당에 잔류하고 있는 범법자를 형사고발하고 한나라당에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4. 우리 삼인련 회원일동은 대동단결하고 위의 사업을 완수하여 우리의 숙원인 '삼청교육대의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권국가를 만들어 삼청교육 같은 인권유린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우리국민 모두가 민주 국가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회원일동

- 6 -

7

## 삼인련 연혁

1. 1988년 7월5일 정오에 종로구 당주동 이철호 회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정인수, 유영근, 전영순, 이적, 정충재 등 10여명이 모여 "삼청교육대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배상"을 위한 투쟁을 하기로 결의 하였음.  
공동투쟁위원장 : 정인수, 유영근 공동부위원장 : 전영순, 정충재  
대변인 : 이적, 사무총장 : 선창영, 사무처장 : 김수배 등 전국 각 지방 지부장을 선출함.
2. 1988년 8월 10일 정오에 평민당 사무실에서 피해자 50여명이 모여 "전국 삼청교육대진상규명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임원 선출 하였음.
3. 1988년 8월 전영순은 각 잡지사 8곳에 고발수기를 써내어 기고하고, 8월18일18시에 기독교방송현장르뽀에 채험방송 보도하였음.
4. 1988년 9월 정인수, 유영근, 이적, 전영순은 한겨레신문사에 방문 기자회견을 하였음. "성명서" "삼청교육대 진상규명 명예회복하라"를 발표함.
5. 1988년 9월 20일 정오 유영근목사 시무 하는 개봉동 제일교회에서 피해자 300여명이 모여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회를 하였음.
6. 1988년 11월 6일 노대통령 시국관련 담화문발표를 하였음.
7. 1988년 11월 13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 쪽 노상에서 피해자 500여명이 모여 밤을 지새우며 삼청교육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한 강력한 정부규탄집회를 하고, 당시 평민당 인권위원장 조승형 전의원이 집회장소에서 면밀히 조사를 하고 엄청난 피해사실에 대하여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8. 1988년 12월 3일 평민당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삼청교육대 의문사 진상보고 대회를 가졌음. 같은날 오자복 전 국방부장관이 응분의 보상을 결정하였다면서 삼청교육대 피해자 신고를 전국각 시 도 구 군 민원실에 신고하라는 보도를 전국 신문에 보도 발표하였음.
9. 1989년 2월부터 8월까지 타 시민 단체와 연대하여 삼청교육 진상규명 명예회복 촉구집회를 수차 하였음.

10. 1989년 9월 10일 고려대강당에서 대회를 개최 500명 참석.
11. 1989년 12월 3일 국회청문회를 열어 피해자 참고인 진술을 정인수, 전영순 등 13명이 하였음.
12. 1989년 11월 7월 6일 6공 노태우정부가 담화문약속을 이행치않으므로 13대국회, 김현의원외 34인이 발의하여 신청함.
13. 1990년 3월 15일 동작구흑석동 불교회관에서 삼청교육대 전국 유가족대회를 개최하였음. 참석인원 200여명.
14. 1990년 6월 정인수위원장이 가정형편으로 강원도로 이사하여 위원장 사임 하므로 단체 재구성 하였음.  
회장 : 전영순, 부회장 : 김팔만, 박도선, 운영위원 : 김선엽, 윤옥자, 남춘자, 이택승 등 "삼청교육대피해자모임"으로 단체명의 변경.
15. 1990년부터 1991년 12월까지 ,정부 정당 3부 요로에 탄원서를 우송하고 촉구하였으나, 결국 13대국회 특별법을 폐기하였음.
16. 1992년 10월 12일 "성명서" 현 6공정부는 남은 잔여기간동안 5공비리의 대사건인 삼청학살 유족과 피해자들의 피맺힌 통탄의 한을 반드시 국회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를 만천하에 공고함.
17. 1992년 11월 25일 "성명서" 민자당은 작성하라. 13대 당시 "삼청특별법"을 폐기시킨 주범인 것을 ...  
종로 천주교회에서 "삼청교육대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특별법"제정을 위한 촉구대회를 개최함. 참석인원 : 100여명.
18. 1992년 10월29일 14대 국회 이원형의원외 94의원이 서명하여 발의 제출된 "삼청교육대피해자의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특별법"을 4년 계류 시키다가 1995년12월에 폐기됨.
19. 1995년 KBS에서 다큐멘터리극장 ; 제7화 삼청교육대 촬영함. 동년 그때 그 사건 제46화 독수리작전 여자삼청교육대 촬영함.
20. 1996년 11월 6일 15대 국회 임복진, 권노갑, 박정훈, 천용택, 정동영, 이해찬의원외 73인이 발의하여 제출함.
21. 1996년 10월 기독교회관 708호에서 단체회의를 하여 50여명이 참석, 임원 재구성.  
회장 : 전영순, 부회장 : 김기태, 이지영, 김효진, 이연수, 운영위원 : 50여명

이 선출됨.

22. 1997년 1월 20일부터 12월까지는 거의 매일 임원들이 국회의원회관에 가서 부탁하였고, 대통령께 탄원서를 올리고, 삼부 요로 및 국회의원 전원에게 탄원서를 우송하였음.
23.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각 시민단체와 정부 요로에 더욱 강력하게 촉구 탄원서를 올리고, 대통령께도 수차 탄원서를 올렸음.
24. 1999년 3월 26일 6월까지는 수차 회원들이 모여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 방법을 논의 하였음.
25. 1999년 7월 1일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하였음.
26. 1999년 7월 22일 오후 9시20분 KBS 2TV 60분에 “국회 정치는 있어도 입법은 없다.”를 상영 하였음.
27. 1999년 7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대국민 서명을 받으면서 제목 “5공 강압통치로 인한 권력형비리 “삼청교육대피해배상 특별법”안을 10년동안 지연시킨 국회는 즉각제정하고 정부는 즉시 시행하라”를 받았음.
28. 1999년 8월 12일 정개협 상임의장 이자현씨가 사무실에 같이 사무를 보기로 허락 하셨음.
29. 1999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두환 전대통령집 부근 놀이터, 한나라당사 앞, 국회의사당앞에 집회를 하였고, 여의도 국회앞에 프랑카드를 계속쳐 놓았음.  
1999년 9월 8일 자료집 “삼청교육대를 아십니까?”를 발간하였음.  
서명날인은 영등포역앞, 서울역광장, 명동성당 앞에 천막을 치고 계속 받아 7,800명을 받아 2회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였음.
30. 1999년 10월 18일 “성명서”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배상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라는 발표를 하였음.
31. 1999년 12월 6일 15대 국회 마지막으로 국방위원회에서 소위를 구성하고 소위를 열어 특별법 심의를 논의 결과 또 폐기됨. 폐기사유는 기각판결문 때문에 국방부가 반대했다고 서면통지 왔음.
32. 2000년 2월 26일 12시 종각사무실에서 2000년도 사업을 위해 회의를 하고 규약을 통과 임원 선출함. 20명 참석함.  
상임고문 : 이자현씨를 추대하였음. 회장 : 전영순, 부회장 : 김기태, 김용식,

박광수, 최순덕, 이사 및 운영위원 10명 선출.

33. 2000년 4월 3일 삼청교육대 명예회복 및 피해에 대한 정부입법의 타당성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께 1차 공개질의를 하였음.
34. 2000년 5월 30일 명실상부한 인권단체로서 명칭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으로 법무부에 등록하였음.
35. 2000년 6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집회를 계속 국방부 맞은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수십회 하였고, 8월에는 전단 “호소문”을 10,000장 제작하여, 전국임원들에게 우송하고, 서울역광장, 명동성당, 각 전철역앞에서 배부 하였음.
36. 2000년 6월 19일 “성명서” “6공정부가 보상결정후 신고받아 방치해둔 삼청교육대 피해자 사상자 3,221명의 명예회복을 현정부는 즉각 처리하라”를 발표함.
37. 2000년 7월 사무실을 기독교회관 510호로 옮겼음.
38. 2000년 8월 31일 “성명서” “삼청교육 명예회복 정부가 1988년도에 신청받은 3,221명을 “국가배상법”으로 즉각 시행하라.
39. 2001년 1월 22일 한겨례21 주간 잡지에 보도하였음.
40. 2001년 1월 29일 대통령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부대내 사망자 54명 조사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양승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장과 면담하고 촉구하였음. 결국 국방부의 반발로 조사를 포기하므로 제3 민원을 제출하여 촉구하였으나 허사임.
41. 2001년 2월 20일 전영순 자택에서 박춘화외 피해자 4명이 MBC 방송국에서 촬영, 24일 날 보도 하였음.
42. 2001년 2월 22일 “피해자증언집”을 발간하였음.
43. 2001년 4월 3일 2001년도 기독교회관 510호에서 첫 임원회의를 하고 2001년도 주된 사업을 ①신문고행사 및 서명날인, ②백서상권발간, ③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특별법 통과를 위한 토론회개최를 하기로 협의하였음.
44. 2001년 5월 28일 전단지 “삼청학살 벼림 받을수 없다.”를 20,000장 인쇄하여 전국 임원들에게 우송하여 뿌리고, 서울역광장 각 전철앞, 명동성당 등에 뿌림.

45. 2001년 6월 8일부터 매주금요일 신문고행사 및 서명날인을 서울역광장, 국방부맞은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계속하였음.
46. 2001년 7월 12일 회원 5명이 10년이 넘도록 재판하여 문민정부당시 기각된 판결을 깨고, 승소 판결을 받았음.
47. 2001년 8월 23일 승소판결문을 첨부하여 국회의원 한화갑의원외 여야의원 12명의 서명날인을 받고, 청원인 전영순외 68명회원 서명날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 현재 국방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 목 차

<b>진행순서</b>	15
<b>기조발표 및 토론</b>	17
● 한상범(동국대 법학과 교수 -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삼청교육의 불법성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을 위한 범리	19
● 김영수(정치학 박사 - 한국외대 강사)	
화해는 용서보다 기억을 요구한다	35
● 김종찬(언론인 - 정치, 경제 평론가)	
가해자 형사처벌 가능하다	42
● 이철호교수(여수공업대학, 경찰행정과 교수)	
1980년 삼청교육대 인권침해 사건과 해결방안	48
<b>피해자 증언</b>	57

## 진행 순서

### < 1부 >

사회 : 김규팔  
(삼청교육백서발간 자문위원)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사회자
개회사	전영순 회장
격려사	한화갑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최고위원)
축전	김근태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최고위원)
축전	최재승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결의문	유영덕 공동의장
삼인련연혁	전영순 회장

### < 2부 >

사회 : 이자현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대표)

기조발표	한상범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토론자 1.	김영수 정치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2.	김종찬 언론인 (정치, 경제평론가)
토론자 3.	이철호 교수 (여수공업대학)
피해자증언	이연수 목사 (공동의장)
피해자증언	심영선 사무처장
종합토론	참석자 일동
폐회	

## 기조발표

# 삼청교육의 불법성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을 위한 법리

- 한상범(동국대 법학과 교수, 민족문제연수소 소장)

## 삼청교육의 불법성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을 위한 법리

한상범 (동국대 법학과 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 1. 군사정권의 만행 - 한국판 [시베리아 행정 유형(行政流刑)]인 삼청교육대

박정희 정권의 수법을 물려받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

박정희 군사정권의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행한 만행수법중에서 전두환 신군부정권은 거의 모두를 물려받아서 지배수단으로 이용했다.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보자.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보위법>로, [정치활동정화법]은 <정치풍토쇄신법>으로, [신문통신등록법]은 <언론기본법>으로, [사회안전법]보다 더욱 확대강화한 악법제도는 <사회보호법>으로, [노동탄압법]은 똑같이 <노동법 개악>으로, [국토건설단]이란 명목의 강제노역 캠프는 <삼청교육대>로 등이다. 이 밖에 법제나 관행은 거의 박정희식 군사독재의 제도와 기술은 답습 모방했다. 물론 박정희 군사정권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방식인 지배기술을 따온 것은 이승만 친일파정권과 대개 같으나, 그 수법과 방식은 더욱 노골적이고 광범위하고 거칠고 야만적이었다.

쿠데타의 명분 찾기와 대중심리 조작수법 및 정적(政敵)에 대한 제압방식으로 무법천지조성

박정희 군사집단은 1961년 쿠데타의 명분을 반공 국시 1호로 내세웠다. 그러나 반공은 이승만 친일정권이 이미 신물이 나도록 반대파나 비판세력을 때려잡는 메카시즘 방식임은 다들 당해와서 알고 있기 때문에 속임수가 잘먹히지 않자, 이승만정권이 깡패와 모리배와 손잡은 정치로서 국민의 원성을 들어온 것을 역이용해서 자기들은 깡패가 아니고 깡패나 모리배를 소탕한다는 인식도 주고 반대세력에게 공포감을 불러 일으켜 제압하기 위해 이정재와 임화

수나 유지팡 등 정치깡패를 잡아다가 거리로 끌고 다니고, 공수부대 군인을 시켜서 죽을정도로 두드려 팤다. 이야말로 법치국가에선 있을수 없는 군인깡패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었다.

#### 무죄추정과 강제노역금지 규정 위반

어째서 범죄혐의자나 자기에게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자. 법치국가에선 아무리 죽을 죄를 진 혐의가 있을 지라도, 누구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추정(無罪推定)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흉악한 범행을 한 혐의가 있어도 수사관이 고문을 할수 없으며, 적법한 재판에 의하여 증거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만 노역을 부과할수 있다. 이것은 프랑스 인권선언(1789년 9조)이나 20세기 2차대전후의 세계인권선언(1949년) 및 우리 헌법(1948년)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 장식에 지나지 않은 간판이 아닌 다음에야 세상 대낮에 어찌 공권력으로 깡패누명을 들씌어서 두드려 패고 강제노역장으로 몰아넣어서 노예노동과 학대를 가할수 있는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 깡패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가 보장받는 인권은 있다. 그런데 유죄가 내려지기 이전에 혐의만 가지고 이럴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한참 사나와지고 유신 쿠데타(1972년)를 준비하고 있을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 1961년 쿠데타후에 강행실시한 무법적인 강제노동수용소인 [국토건설단]의 위헌 위법성을 <신체의 자유와 강제노역의 금지>란 제목으로 써서 정부간행물인 법제처의 <<법제월보(法制月報)>>에 기고했다. 나에게 원고를 써달라는 청탁을 하기에 내가 무엇을 써야 하는가 문의하자, 필자가 자유롭게 제목을 정해 쓰라고 했다. 그런데 투고 후에 얼마 지나서 책까지 나왔다고 했는데 담당직원이 전화를 하여서 큰일이 났다고 했다. 나는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필자의 자유 재량에 맡긴 것이니 나로선 소신대로 한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원고 내용을 자기들도 잘 보지않고 인쇄 출판했는데 박정희 혁명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 되어서 파면당하게 되었다고 애걸 복걸 살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나와같이 군사정부의 강제노역제도가 헌법의 강제노역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는 시평을 쓴 김종수 변호사가 있다고 했다. 김변호사는 당시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겸임하면서 주간지에다 군정의 강제노역제도를 비판하였다. 그래도 법제처 담당자는

자기들은 관리이기 때문에 상관에게 책임을 추궁당하면 직위가 날라간다고 올상이 되어 사정하면서 이미 발간된 것을 폐기하고 책을 새로 만들게 하여달라고 했다. 결국 그들 개인의 처지가 불쌍하여서 승락하고 그 후에 다른 법률수험지에 그 글을 게재하였다(한상법, <身體의 自由와 強制勞役의 禁止> 考試界. 1972년 2월호.).

#### 삼청교육대의 외국 선례로서 시베리아 행정유형제도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살인적 학대와 인간 모멸의 강제수용소를 어디에서 선례를 모방해 왔는가 하느냐 할 때에 우선 전두환 신군부는 박정희의 [국토건설단]에서 선례를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했다. 그러면 박정희의 징벌과 강제노동을 겸한 인간 말살에 이르는 야만적 죽음의 강제노동수용소의 외국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나찌스의 아위슈비츠와 같이 죽음을 전제로 한 말살수용소와 전체주의국가의 정치범 수용소를 선례로 생각할수 있다.

그런데 좀더 문제점을 구체화시켜 보면 삼청교육대란 강제노동수용소는 19세기의 제정 러시아의 [시베리아 행정유형제도]가 선례가 될 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채 혐의자인 것만으로 행정처분의 한 방식으로 수사기관에서 연행 체포 구속하여 검찰과 경찰 기타 사회유지 또는 사회정화위원회라고 하는 관제 어용기관의 신고 자문으로 결정하는 점에서 그렇다.제정(帝政) 러시아의 시베리아 유형(流刑)은 형사재판에 의하지 않고 도지사의 행정상의 권한으로 결정한 것이다.
- 2) 다음에는 벽지 변방으로 보내어 민간생활에서 격리시켜서 군부대의 관할 하에 주는 것이 시베리아 행정유형이나 유형의 특징의 하나이다. 물론 군의 감시를 받고 군이 관장하는 것은 변방 국경 오지(奥地)의 경우이다. 삼청교육대란 강제수용소에서도 군가운데서도 특수부대인 공수부대나 일선 특전대나 각 전투훈련부대에 소속되게 해서 조교가 관리했다.
- 3) 세번째로 수용된 자의 수용 - 관리 - 통제는 군관계자의 전권 재량에 속하였던 것이 시베리아 유형에서 군관리하에 두었을 경우이다. 여학생 혁명운동가도 시베리아 행정유형으로 국경 벽지 부대로 가면 낮에는 군인의 군복세탁이나 식당 일로 부터, 또 밤에는 그들군인들의 성적 노리개가 되게 강요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래서 미치거나 자살하거나 자포자기해서

폐인이 되었다.

4) 수용소에서 징벌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징벌적 보복적 체벌과 모욕과 함께 강제노욕을 병용시켰고, 나아가서 징벌을 과하는 것은 아마 한 국 군부가 마련한 삼청교육대가 더욱 악랄했을 것이다. 어느것이나 법률 적 기준이나 통제가 부과되지 아니한 현장의 관리자의 자의가 통할수 있는 무법적인 요소를 애당초 내포하고 있었다.

## 2. 삼청교육대의 발상과 그 설치과정을 통해서 본 군정권력자의 인간관(人間觀)

군사정권의 군국주의의 人間觀 --- 모든 국민을 이등병으로 본 군사 깡패의 작태

박정희 아래 군사정권이 민주주의와 양립할수 없다고 하는 근본이유는 그들은 모든 인간이나 주권자인 국민을 [이등병]으로 내려다 보고 다루었기 때문이다. 자기는 별을 단 장군이나 높은 계급의 장교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등병이다. 그래서 이등병인 국민은 명령의 대상이고 객체이지 인격적 주체가 아니었다. 따라서 국민이 불복하고 말을 안들어 먹으면 명령불복종이니, 우선 욕설과 주먹질 발길질, 나아가서 각종 골탕을 먹여 괴롭히는 군대 특유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런데도 안되면 징벌로 급식제한으로부터 독방수용 등 물리적 적용하였다. 물론 최종에는 사형 등 형벌조치가 있었다. 결국 삼청교육대 현장에선 현장 실무를 담당한 조교들의 폭력으로 대신했다.

국가를 병영화(兵營化)시키고 마침내 감옥국가로 만든 친탈권력의 죄악상

라스웰은 그의 유명한 저서 <<권력과 인격>>에서 현대국가가 전체주의(全體主義) 국가는 물론이고, 그렇지 아니한 나라의 정부 권력도 집중 강화 확대되어 가는 불가피한 추세 때문에 나라가 정도의 차이를 불문하고 감옥화(監獄化)와 병영화(兵營化)의 위험에 놓여 있다고 했다. 여기서 한국의 군사정권의 [감옥국가화]를 보려면 박정희 등 친일파의 정부에 대한 인식과 그 권력구조 관리 면의 동기와 실제적 기술을 봐야 한다.

박정희 일당등의 신원을 보면 일제하 친일부역배로서 일제 주구들이었다.

그들이 군사정권에 참여하여 주요한 역할을 한 군정 구성원은 만주괴뢰국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거나 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을 볼수 있다. 1932년 일제 관동군이 급조한 괴뢰정권 만주국 정부는 관동군이 직접 관리한 [군사국가]였다. 총력전(總力)戰을 위한 [국방국가]로서 일제의 보조역을 하는 식민지 국가였다. 따라서 군인이 군대식으로 직접 관리 통제하는 방식의 지배구조이고 관료가 국민을 통치의 객체로서 하향식으로 이끌고 나가는 [군사국가]이고 [관헌국가]였다. 따라서 여기에는 본래의 사회이해갈등을 조정하는 정치는 없고 전제적 지배이고 행정은 군대식 명령 복종과 감시 통제 및 징벌과 박탈의 위협이 대신했다. 군인이 직접으로 국민통제를 하는 병영화된 정치체제였다. 그런데 그것이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기술적 통제조작보다 강압적 전근대적 야만적 징벌을 수반한 것인점에 특징이 있었다.

만주의 [대동학원]이란 친일파를 주로 육성하는 관료양성기관을 나온 최규하같은 인물이 박정희 피살당시에 국무총리직에 있었고, 만주 친일 어용기관인 [오족협화회] 사무국장을 한 친일파 이선근이 정신문화원의 원장 등 온갖 고위직책을 담당해 박정희의 정신적 대부 역할을 했다. 정일권은 박정희 처럼 만주국 군관학교 출신으로 연변지구 일제군대의 현병대위를 한 반민족 분자였다. 일제주구로서 만주국을 무대로 활약한 자들은 우선 만주국의 군사적 경영을 배웠고 여기에 일제 식민지 경영이 합쳐 진 정부 운영방식을 만들어 내었다. 그래서 1961년 5·16 쿠데타후에는 더욱 국가나 사회전반을 [병영화]시켜서 국민을 이등병으로 다루고 시민의 사생활까지도 규제하는 일제식 감시 통제체제로 발전했다. 그러면서 결국에 그들이 만들어 내는 것은 국가 자체의 [감옥화]였다. 나는 삼청교육대란 강제수용캠프의 반인간적 반인륜적 노예수용 소제도는 군사정권의 병영국가와 감옥국가가 합일한 극치를 이룬 악랄한 제도라고 본다. 그들은 개개 시민을 이등병으로나 또는 죄수로서 보았고, 그래서 결국은 노예로서 다루게 되기에 이른다고 하는 점이다.

삼청교육대의 조교의 악독한 만행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그들도 개인으로선 그저 평범한 인간일수 있다. 그들을 그토록 인간 백정으로 만든 것은 병영국가와 감옥국가의 체제가 아닌가? 그들은 그래야만 그 체제에서 살아남는 톱니바퀴의 한 부분일 뿐인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들만 중요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체제와 제도를 날조 조작한 주도적 책임자와 주요방조자들을 미워하고 규탄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주동인물들은 자기가 제도를 만들때의 본래의 취지는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순화]와 사회정

화가 목적이었다고 그럴듯한 변명과 궤변으로 속일수 있다. 여기에 속아선 안 된다.

#### 이른바 [국가보위법회의] 삼청교육시행, 80.7.29. 삼청 5호작전 수립

국보위란 군인중심의 헌법파괴의 쿠데타 기관이 국회를 비롯한 국가통치의 최고 권한을 제멋대로 수행한다고 할 때에 그들은 정치도 작전이고 행정도 작전명령이고 행정은 군사행정이며, 입법과정도 작전계획 수립의 하나였다. 그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자부한 그들은 80년 5월 17일 헌법파괴적 계엄화 대실시를 기화로 [사회정화위원회]라고 하는 밀고권장 접수와 지역 - 직장의 반정부세력의 감시 임무를 가진 기관을 설치하였다. 대학이나 언론사까지 이 기관을 만들어서 총장이나 사주가 밀고와 감시의 주범으로 이질분자(?)를 제거하는 일에 하수인이 되었었다. 그런데도 그 앞잡이 노릇한 자들은 아직도 한번도 사과 사죄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군사반란과 내란의 죄로 유죄로 극형을 선고했으나, 싱겁게 사면하고 그에 따른 후속 개혁과 시정조치를 하나도 제대로 안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를 방관해 온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민주반역의 시종꾼 노릇한 배신자를 두고 무슨 민주화를 한단 말인가? 돼지도 웃을 일이다.

삼청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총 6만 7백명을 검거했다. 그중에서 4만여명이 강제 연행되었는데, 이 수자만 봐선 그 뒤에 가려진 비극의 참혹한 사정은 잘 알수 없는 것이다. 1980년의 전두환이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집단 살인극을 벌린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계엄을 확대한 것을 기화로 영장없이 마구잡이로 검거해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직장에서 내쫓고 백지 한장에 도장찍게해서 방송국을 비롯한 재산을 약탈했다. 자기들끼리 약탈한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유용한 것은 이루셀수 없을 것이다. 삼청작전도 그 일환이었다.

그 후 노태우 정권하에서 국민의 민주적 봉기의 기세에 겁을 집어 먹고 회유조차로서 국방부가 그럴듯하게 꾸민 담화문을 내고 보상 약속을 했지만, 처음부터 그들의 본심은 자기들의 무법 불법을 시인할 생각은 없었다. 애당초 노태우의 1987년의 [6·29선언]이 <속이구보자 선언>이듯이 시간끌기와 당장 속이고 넘어가기식의 호도책이었다.

지금 김대중정부가 50년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하였다고 하면서 정권 말기에 이르기 까지 이 일을 마무리 못짓고 있다. 도대체 이것이 법치국이냐? 결국 당국은 무법 불법의 천지를 방관하여 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 삼청교육의 피해자, 그들은 누구인가?

삼청교육의 피해자는 재판없이 징벌을 당하며 무죄추정의 권리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 의뢰권이 원천 봉쇄당하고 인간 이하 동물만도 못한 수모와 학대를 당하고 죽어가고 병신되고 병들어 폐인되고 가족이 파산되어 분해이산되고 생업을 잃고 파탄되어 사회적으로 이미 그 존재가 종말로 이르게 된 최대의 피해자이다. 따라서 그 가해자는 국가기관을 사칭 참칭한 범죄인들이다. 범죄혐의자는 오히려 군사 쿠데타 주범과 그 졸개들인 가해자 쪽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삼청교육의 피해자의 사회적인 약점이나 문제점을 들먹여 이러쿵 저러쿵할 자격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구체적으로 삼청교육인 강제수용소에 끌려간 피해자를 그 사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삼청교육대인권연합 간행, 삼청교육대 피해자증언집 : 우리는 80년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참조).

#### <삼청교육 대상자가 된 피해자의 유형>

- 1) 군사정권에 반대성향이 있다고 보이면서 특별하게 법률로 처벌할 약점이 없는 소시민층들중에서 걸려든 자, 예를 들면 야당쪽에서 비판세력의 일원이 되어 온 지방의 정치지향의 유거나 인사.
- 2) 군사정권의 정책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말을 안들어 먹고 불편한 존재라고 찍힌 사람, 예를 들면 지방 방송국의 책임을 지는 자인데 방송 소유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 3) 직장이나 지역의 사회정화위원회가 밀고하고 지목한 사람들, 예를 들면 기업체의 노조간부나 비판적 인사.
- 4) 과거나 당시 현재에 약점이 있는 사람으로 찍히거나 우연히 걸려든 사람.
- 5) 개인 사이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밀고당하고 모략중상과 모함을 당해 끌려간 사람. 이에 속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

그 밖에 수사관헌이나 공무원 등 지방유지와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밀고당한 사람들이 있다.

### 3. 불법 무법 처분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대하여

#### (1) 삼청교육의 위헌 무법성에 대하여

삼청교육이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있을수 없는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처사는 공권력을 악용해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일부의 군인집단이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저지른 엄청난 대규모적 국가공권력을 동원한 범죄였다.

그들 군사정권의 무리나 그 추종배들은 헌법이 정한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이 아주 웃으광스러운 정치적 구호이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근본규범의 원리를 애당초 깔아뭉기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 유린하여 강제노역을 불법적 부과했었다. 특히 그들은 자기들이 반사회적 위험인물이라고 혐의를 들씌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기 방어나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채, 재판에 의해서만 처벌할수 있다고 하는 원칙을 무시했다. 근본적으로 무죄추정의 권리를 일체 배제하고 말았다.

물론 그들은 불법적으로 선포 강행하는 비상계엄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계엄제도도 일제식 계엄제도를 그대로 존치 개악한 것으로 2차대전후 민주국가에선 한국과 같은 계엄제도는 없다. 일본제국 헌법의 계엄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최고 입법기관이 정상가동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계엄포고령이란 명령으로 입법을 하여서 입법기관을 배제하고 행정과 재판을 무조건 군대가 장악하는 제도는 쿠데타의 수단과 방편으로 일찌기 이승만의 정치탄압으로부터 박정희의 쿠데타와 그 정권 유지에 이용되어 왔다.

우리가 군사정권의 무법성과 정통성 부재를 문제삼는 것은 그 정권이 창출 과정 자체의 불법성에서 비롯해서 그 정권의 유지과정이 계엄과 긴급명령 및 위수령 발동이란 군사적 역압체제이고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공작정치가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군정지배자는 전 국민을 이등병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죄수로 보며 나아가서 [잠재적 적대분자]로 간주해서 감시하고 제압하며, 징벌하겠다는 협박을 일상으로 하고, 범죄혐의를 조작 날조하여 단죄 말살하며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들은 결국 국민을 적대시한 국민상대의 전쟁체제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권과 그 지배가 민주 법치국가의 원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 부정함은 말할 것도 없다.

#### (2) 군사반란과 내란의 죄의 수괴와 그 하수인이 된 공직자의 범법과 불법행위

##### - 전두환의 쿠데타 단죄와 그 쿠데타 권력의 불법행위 -

전두환 노태우 등의 12-12(1979년) 및 5-17(1980년)의 쿠데타는 군사반란 및 내란의 죄로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김영삼정부하에서 심판해서 극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그들에 대한 정치적 배려로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아서 형을 면제받기는 하였으나, 그들 쿠데타가 불법이고 무법인 내란과 반란의 범죄로서 헌법질서 파괴의 범죄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확인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등 군사정권이 자행한 삼청교육대 강제수용소의 설치의 위법성은 더욱 자명해졌다.

삼청교육대 설치 및 운영이란 명목으로 군인과 경찰관 및 검찰이 합세하고 행정공무원의 보조 등으로 [사회정화위원회]란 밀고 감시기관을 앞세워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가혹행위죄(고문죄) 살인 폭행 상해의 죄 등 폭력범죄로부터 공갈 협박 및 강도적 행위까지 수반한 범죄행위였다. 이러한 공무원의 직무를 빙자한 행위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것은 행위주체가 공무원이고 행위 태양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그 불법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헌법29조 및 국가배상법). 그러한 직권을 남용한 공무원의 범죄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응당의 책임추궁이 따라야 한다.

더욱이 삼청교육대같은 노예적 징벌과 노역을 겸한 강제수용제도는 현대에는 전체주의국가나 팟쇼국가 이외에는 존재치 않는다. 이미 19세기 각국이 노예노동의 제도를 폐지하였고 우리헌법도 제헌당시(1948년)부터 강제노역금지 규정을 설치했었다. 그런데 유신쿠데타 헌법(1972년)은 이 강제노역금지 규정까지 삭제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폭거라 하겠다.

남북전쟁을 치루고 노예제도를 폐지한 미국연방헌법은 수정 제13조(1865년)에서 “노예 및 임의성이 없는 강제노역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적법하게 선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중국안 및 그 관할안에서는 금지된다.”고 정하였다. 이러한 외국조항을 들먹이지 않아도 명색이 민주공화제의 법치국이란 정부하에서 어떻게 이 짓을 할수 있는가? 1972년 유신 쿠데타를 하면서 박정희 정권이 강제노역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인권에 대한 제한을 국가안보를 빙자해서

엄중하게 강화한 것은 그들의 속샘과 정체를 드러 낸 것이다. 그것을 전두환 정권은 보다 잔혹한 방식으로 강화시킨 것이 바로 삼청교육대인 것이다.

### (3) 삼청교육대 설치 - 운영 - 기획 - 집행지휘 책임 주동자 등 색출(索出)과 책임소재의 규명(糾明)의 필요성

삼청교육대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발상 기획 입안 구성 및 집행을 한 것을 국보위와 표면에 나타난 몇가지 외견상의 상황을 가지고선 그 불법성은 청산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 실상을 공개하여 정부는 피해자나 유족 및 모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정부에 정의가 없다면 그것은 도적의 집단”이라고 보는 것은 고대서양의 법철학의 전통이다. 특히 스콜라 철학에서 이를 명시하여 악마의 종이 되는 권력자에 대한 저항권을 기독교에선 정당시하고 있다. 종교를 떠나서도 권력에 정의를 갖춘 합법성이 없으면 그 권력은 도적 강도의 폭력이다. 바로 쿠데타 권력이 정통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 무법집단의 행위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기능은 물론 공적 유권기관이 수행토록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다음에 무법 불법으로 남을 해쳐서 죽이고 병신만들고 집안망치고 사회혼란을 야기시킨 장본인, 특히 그 최고 책임자는 처벌받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나라는 쿠데타로 피바다를 만들어 죽인 놈은 놔두고 그 피해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만 보상하고 그 범죄자 장본인은 막대한 거금을 짜놓고 호사스런 생활을 하며 재기를 꿈꾸는 도둑의 나라가 되었다. 그들이 배상한 자력이 없으면 모르려니와 그것은 말이 안된다.

한편 이문제에 대해 형의 공소시효나 배상의 시효 등을 따져서 난색을 표하는 법률론이 나올수 있다. 친일파가 매국 역적 짓으로 벌어들인 수천억 수조 원의 재물을 공소시효가 지났고 사유재산으로 보장되는 재산이니 이를 제한 박탈해서 갚게 할수 없다고 하는 논리나 같다. 그런데 이 법리를 무기로 친일파가 살아남았고, 모리배 부정축재자의 재산과 형사책임이 법망을 피했다. 정작 지키라는 법은 안지키고 이러한 탈법적 법리만은 열심히 개발하는 친일 부패기득권의 법기술자들의 농간을 그대로 두고 봄선 안된다. 시효제도는 민주한국자나 강도나 도둑을 두둔하려고 정의를 유린시키는 구실로 생긴 제도가 아니다. [실질적 정의](實質的 正義)]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효제도 수정 무시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반민족 반인륜범죄를 단죄하는 국제법과 독일 프랑스 등 문명국가의 법리가 있다. 우리도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를 처벌한 것은 실질적 정의를 우선시켰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당연 배상문제도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점 모두가 특별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 (4) 명예회복과 배상 및 보상

군사정권하에서 삼청교육의 피해자는 피해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범죄 혐의자나 전과자 또는 위험분자 등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서 감시 배척을 당해왔다. 그러한 삼청교육피해자의 인적 신분사항을 증명하는 문건에 전과자와 똑같은 표시를 해서 차별하고 감시하였다. 그래서 증명발급이나 신원확인 또는 취직이나 사업을 위한 증명발급 등에 이르기 까지 차별 냉대를 받아 왔다. 결국 이것은 사회인으로서 생존의 종말이고 생존권의 제한 박탈로 귀결되었다. 무엇보다 당한 수모와 피해도 억울한데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모욕과 불이익이 지속되었다.

특히 삼청교육을 당한 사람의 가정 파탄과 가족 붕괴는 더욱 비극이었다. 남편이 삼청교육대로 끌려가서 동네에서 백안시당하고 생계가 파산되어 아내의 가출 이혼 또는 자녀의 고아신세로의 전락 등 이러한 가정의 비극을 초래케한 자는 살인 강도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무엇보다 정부는 그들 명예회복의 조치를 강구해서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도록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인이 삼청피해자에게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수 있는 장해와 제약 등을 없이해야 한다. 동시에 정당한 배상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배상은 국가배상법의 절차를 현행법상으로는 따라야 하는데, 법원은 시효를 이유로 거부하였었다. 그에 대해서 정부는 피해자 배상과 보상문제를 일괄 해결할수 있는 특별 입법조치를 약속하고 있으나,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 군사정권의 포악성 앞에서 그 피해자들이 배상청구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시효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한채로 방치해 오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또 한번의 권리 박탈과 모욕 학대의 범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삼청교육의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그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여 신속 공정하게 정당한 배상과 보상 조치를 강구해 주어야 만 우리는 법치국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피해를 사망 질병 불구 기타 정신질환 등 종류와 등급별로 분류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5) 삼청교육 피해자를 보는 잘못된 편견의 시정을 위한 대책

우리는 일제식민지시대에서 독재정권의 시대를 거치면서 민중이 관료 군인 경찰의 학대를 받아 왔다. 특히 이승만 시대는 [경찰국가]로서 관리의 횡포로 힘없는 백성이 기를 끊고 살아 왔다. 군사정권하에선 밀고와 감시의 체제에서 겁에 질려 전전 궁금해 왔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관헌국가적(官憲國家的) 편견(偏見)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관리가 그 사람은 잘못이라고 해서 연행 심문 감시 기타 불이익조치를 하면 그가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따질것 없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단정하여 [기피인물]로 보고 대하거나, 관리와 함께 그러한 억울한 사람을 학대 모욕하는 편에 가담한다. 우민정책이 만들어 낸 무지 몽매한 민중의 [서로 잡아먹기식]의 바보 짓이다. 그런데 이러한 타성과 편견은 좀처럼 청산되지 않는다. 삼청교육을 비롯한 권력의 피해자가 가장 괴로운 일은 바로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일이다.

다음에 일제 치안유지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이어지는 메카시즘의 공포 분위기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정부에서 기피하거나 감시 적대시 하는 인물의 옆에 있다가 [날벼락]을 맞는 피해자가 될까봐서 누구이고 정부기관에 끌려갔다고 하면 그 당사자는 물론 그 집안사람과 벽을 쌓고 외면한다. 결국 약한 백성이 서로 의심하고 서로 기피하게 하여서 파편화시켜 무력하게 만드는 독재권력의 우민정책이 성공할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당한 경험을 참고로 말해 보겠다.

1980년 5·17 쿠데타조치이후 군사정권이 반정부 인사의 일제 검거와 민주단체의 해체 등 무법천지를 만들어 갈때에, 나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반에 끌려갔었다. 학교의 관리책임자가 사회정화 차원(?)에서 밀고하였기 때문에 연행되었다. 당시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반에 연행 구금당하면 심문과정에서 (1) 직장에 사표를 내고 풀려나는가 (2) 그렇지 않으면 구속 기소 당하거나 (3) 삼청대로 가든지 해야 하였다. 당시에 나에게서 트집잡을 증거가 별로 마땅치 않은 것이 작용해서 운이 좋게도 나는 일단 조건부 석방이 되었다. 그래서 학교에 돌아오니, 대개의 교수와 직원이 겁을 먹어 외면하고 피하면서 대하길 꺼려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이가 갈릴 정도로 분하고 불쾌했다. 거기다가 총장이란 사람은 징계로 우선 나에게 경고처분을 하고, 이러저러한 제약에 따

르라고 하면서 모욕하였다. 그들에게 변명도 통하지 않았고, 변명하고 자기 소명을 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아마도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당사자나 가족은 더욱 기막힌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차별을 당해 왔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피해, 다시 말해서 군정탄압의 피해자를 [사회적 기피인물]로 몰아버리는 독재정권이 만들어 논 함정을 어떻게 하던지 없애야 한다. 우선 군정의 삼청교육의 범법성과 그 피해자의 정치적 재물로 이용되었음을 알리고, 나아가서 독재권력이 왜 그러한 악독한 인권유린과 상호 불신조장의 정책을 써서 국민을 분열시켜서 서로 의심하고 불신케하였는지, 그 정체를 파악하게 하는 정도까지 이르려야만 우리는 군사독재가 오염시킨 독소를 뿐리 뽑아 버릴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한 점이다.

#### 나머지말

우리가 의원입법으로 삼청교육대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할때에 의원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내고, 한편 이 법안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서 통과시키게 하려면 고난의 노력과 투쟁을 통해서만이 이 두터운 장벽을 돌파할수 있다는 것을 새삼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사회의 정치적 부조리의 희생양인 삼청교육피해자의 인권 회복에 나서야 한다. 그 밖에 모든 독재정권 피해자와 민주연대를 구성해야 한다. 모두가 같은 피해자이며 민주화와 민족 생존의 자주화란 과제에서 한 배를 타고 있다. 이 역량을 하나의 힘으로 집결해야만 한다.

아직도 이 사회에는 일제친일기득권세력과 그 아류 추종배들이 실세로 군임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 현실에서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다.

## 토 론

### ◎ 화해는 용서보다 기억을 요구한다.

- 김영수(정치학박사 - 한국외대강사)

### ◎ 가해자 형사처벌 가능하다.

- 김종찬(언론인 - 정치·경제 평론가)

### ◎ 1980년 삼청교육대 인권침해 사건과 해결방안

- 이철호교수(여수공업대학, 경찰행정과 교수)

## 화해는 용서보다 기억을 요구한다

김 영 수(정치학 박사, 한국외대 강사)

- 이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로 제출된 한상범 교수님의 발표문은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학술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진실과 그 기억을 되살리는 한 과정이자, 진실규명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쿠데타 세력이 위헌행위를 저지르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탄압하고, 국가를 감옥국가로 병영화시킨 죄상을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 사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고, 또한 그러한 작업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들을 발굴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상범 교수님의 발제문은 다양한 시도들 중의 한 단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과거 역사의 진실을 밝혀 현실과 미래 역사의 기억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 따라서 본 토론자는 발제문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약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삼청교육대 사건의 정치적 의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신군부 쿠데타 세력 및 군부정권의 반인권적이고 탈법적인 국가폭력에 대한 정치적 '기억세포'를 되살리려 한다.
- 삼청교육대 사건이 추진된 시기는 신군부 세력이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힘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에 대해 실권을 장악한 뒤 사회정화라는 이름 하에 사회 전반에 걸쳐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유신헌법에 따라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추대되어 집권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 쿠데타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다단계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권력장악의 과정에서 공포정치를 통해 정치적 국민동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국민들은 국보위 세력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지하거나 혹은 공포정치에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수동적 지지세력'으로 변화되었다.<sup>1)</sup> 삼청

1) 한 예를 든다면 국민투표 참가율과 찬성율이다. 1980년 10월 23일 새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율 95.5%, 찬성을 91.6%로 통과, 그래서 27일에 새로운 헌법이

교육대 조치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정화운동은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주요 기제로 작용하였다.

- 이 시기 권력의 핵심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였다. 1980년 5월 27일 전군 회의에서 결의하고 5월 31일에 결성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목표는 네 가지였다. ① 안보체제의 강화 ② 경제난국의 타개 ③ 정치발전 내용의 충실 ④ 사회악 일소에 의한 국가규율의 확립 등이었다.
- 국보위는 사회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안정을 저해하고, 국민의 혐오와 원성의 대상인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조직·상습폭력, 치기배, 기타 퇴폐적인 행위자, 그리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 등이다. 그런데 역사의 진실과 기억은 ‘신군부 쿠데타 세력’이 사회악이었음을 밝혀 주고 있다.
- 삼청교육대 사건의 정치적 의의를 다섯 가지만 지적한다면 아래와 같다.

#### ① 쿠데타 세력의 정권창출 명분

- 신군부 세력은 여섯 단계를 거쳐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sup>2)</sup> 단계 구분의 근거는 ① 전두환(계엄사령부)의 존재 기반이 변화되는 시점 ② 계엄사령부와 최규하 정부간의 권력관계가 변화되는 시점 ③ 전두환의 권력장악이 명백하게 가시화되는 시점 등이다.
- ①제1단계(1979.10.26~12.12): 군을 장악하는 단계, ②제2단계(1979. 12.12~1980.4.14): 군의 재편 및 반공 분위기 조성단계, ③제3단계(1980. 4.14~5.17): 행정부 장악에 나서는 단계, ④제4단계(1980. 5.17~5.27): 민중저항을 무력으로 항복시키는 단계, ⑤제5단계(1980. 5.27~8.27): 유신헌법으로 집권하는 단계(사회정화운동의 단계), ⑥제6단계(1980.8.27~1981. 2.11): 새로운 헌법의 제정과 정치권 재편단계.

발효되고 국회·정당·통일주체국민회의를 해산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전두환은 10월 28일에 입법의원 81명을 임명하였다.

2) 신군부 세력의 정권창출 과정을 다단계 과정으로 분석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는 손호철과 정해구이다. 손호철, 「80년 5·18항쟁」, 『해방50년의 한국정치』(1995; 새길), 정해구, 「한국사회의 정치변동과 민중투쟁」, 『광주민중항쟁연구』(1990; 사계절).

- 이 과정에서 구정치인들, 야당 정치세력, 민주화 운동세력, 민주노조운동세력 등을 사회악세력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세력에 의한 새로운 정권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었다. 즉 기존 정치세력의 ‘무능과 부패, 선동에 의한 사회혼란과 북괴의 위협’ 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지도자 출현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최규하도 하야성명서에서 동일한 논리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국법질서의 소란과 사회안정 파괴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질서와 안정 없이는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경제성장 또는 정치발전도 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다시 한 번 뼈아프게 깨달았던 것입니다.”<sup>3)</sup>
- 당시 한 일간지는 국보위의 삼청교육대 조치를 찬양하였다. “5.16 직후 군당국이 1만 5천 8백 여 명의 깡패들을 소탕, 국민의 갈채를 받았던 것보다 이번 조치가 더 농도 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은 10.26 이후 한동안 불안정한 정국을 틈타 폭력배들이 국민들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민들을 괴롭혀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보위와 같은 강력한 추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등장하지 않는 한 악의 뿌리를 쉽사리 뽑을 수 없었다.”<sup>4)</sup>
- 일반적 접근으로서 새로운 정책, 파격적인 정책으로 집권의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과의 차별화, 3김세력과의 차별화, 전두환을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숙정과 사회적 충격요법이 필요했다.

#### ② 새로운 지도자와 강력한 지도력의 형성

- 전두환은 8월 10일 자 경향신문과의 단독 회견에서는 기존 정치인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10.26사태 이후 사회의 전 기능은 정지하고, 날개를 펴게 된 것은 선동정치가뿐이었다. 강한 지도력이 결집되지 않고는, 이 나라의 모든 기능이 수십 년 후퇴하고 말 두려움이 있었다.” 반면에 경향신문 이진희 사장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이것을 담당하느라

3) 조선일보 1980년 8월 17일 자.

4) 장의덕, 「제2의 광주학살」, 176쪽.

어려움이 많은 전두환 위원장이 좋은 싫든 신시대를 지도하지 않으면 안될 역사적 책임을 담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sup>5)</sup>

- 그래서 상임위원회 의장인 전두환은 1980년 6월~8월 사이에 중요 회의를 직접 주재하거나 국정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것의 추진상황을 일일 파악하였다. 또한 종교계 지도자, 대학의 총·학장 등 사회지도자들과 연쇄적으로 회동하면서 사회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와 같이 전두환을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악 세력’을 일소하고, 기존 정치세력을 배척할 명분의 획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신군부 세력에 대해 정치적으로 저항할 최소한의 힘조차 무력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 ③ 정치적 국민동원

- 8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12,900여 회의 사회정화운동 결의대회가 추진되었다. 하루 평균 약 370회 정도의 결의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였다. 결의대회의 핵심내용은 “각급 행정구역단위 및 학교단위의 정화추진위원회가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불량배와 토색적 비리자를 척결, 즉 사회적 비리와 폐습 등의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sup>6)</sup>이었다.
- 동원시스템은 각급 행정단위체계를 중심으로 결성한 위원회와 위원들이었다. 위원은 총 1백 31만 6천 명 정도였다. 각급 정화추진위원회는 총 82,920 개였는데, 시·도·통·리·반·부락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중심으로 67,555 개, 각종의 직능·직장·학교단위로 15,365개가 설치되었다.<sup>7)</sup>
- 정화추진위원회는 1980년 9월 10일까지 총 162,96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불량배 색출 및 고발과 관련된 회의안건은 539건이었다. 순화시책의 반영안건이 6,551건, 캠페인 전개안건이 7,624건, 사회정화의 교육홍보안건이 24,432건이었다.<sup>8)</sup>

5) 경향신문, 1980년 8월 10일 자.

6) 국보위백서, 49쪽.

7) 국보위백서, 51쪽.

8) 국보위백서, 52쪽.

- 국민들이 국보위의 집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각급 행정단위체계를 이용하고, 국민들을 능동적·수동적 지지세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또한 사회정화운동과 국보위 활동의 정당성에 동의하는 세력을 동원하여 정치적 동원역량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 ④ 사회적 공포분위기 조성

- 먼저 구정치인 및 고위관료 등의 사회적 지도급 인사들을 숙정하여 사회정화운동의 명분을 획득하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악 세력’의 일소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 ‘새로운 정권창출’의 정당성을 삼투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공포정치에 대한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조치였다. “깡패 000가 체포되어 삼청교육대에 갔고, 000는 반병신이 되어 삼청교육대에서 나왔다는 등의 풍문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국민들은 공포감에 빠져들게 되고, 난세는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되었다.”<sup>9)</sup>
- 비상계엄의 간판 아래 통치실권을 장악한 군부세력은 언론, 출판, 집회의 제한을 가장 선행하였다. 가장 즉각적인 조치는 중앙일간지와 방송사의 부장급 이상을 개별 접촉하여 회유공작을 실시하는 한편 신문·방송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열이다.<sup>10)</sup> 그리고 반정부 언론인(8월 9일까지 711명이 해고됨)에 대한 숙정이었다.<sup>11)</sup> 그래서 언론계는 7월 29일~31일에 열린 총회에서 「自家淨化」를 결의하고 나섰다. 권력에 대해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체제언론」으로 완전히 환골탈태하였고, 언·관복합체를 구성하여 군사통치체제의 중요한 통치기반을 구축하였다.
- 정부 및 국보위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하고, 공포정치의 힘으로 정부와 국보위의 의지가 사회의 말단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에 대한 통제와 장악은 필수적이었다.

9) 이덕봉, 제5공화국 정치비사, 고려기획, 1988, 152쪽.

10) 1980년 4월 이후 보안사 내에 언론대책반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K-공작계획이 추진되었다. 지병문 외, 현대 한국정치의 전개와 동학, 328-329.

11) 박권상, 「언론통폐합과 언기법 제정」, 동아일보사, 『현대 한국을 뒤흔든 60대 사건』, 1988년 1월, 283-284쪽.

## ⑤ 민주노조운동의 일부세력 격리

- 노동운동계에 대한 정화조치는 80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노동계에 대한 정화조치는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발표 년·월·일	지 침 명
80년 7월 1일	비상계엄하 노동조합 활동 지침
80년 8월 21일	노동조합 정화지침
80년 9월 15일	노동조합 정화추진 계획 시달
80년 11월 4일	정화된 노동조합 간부의 노조활동 금지
80년 12월 16일	노동조합 운영지침 시달

- 이러한 지침으로 노동조합운동의 지도부들을 숙청하고, 한국노총 산하 106개 지역지부를 법적 근거로 해산시켰다. 1980년 12월 7일 이후에는 당시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주요 사업장, 즉 원풍모방, 반도상사, 청계피복, 서울통상, 한일공업, 태양금속 등의 노조간부들에 대한 제2차 불법수사를 단행하였다.
- 노동조합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노동자들은 1979년 하반기, 1980년 3월~4월에 생존권의 확보와 노동조합운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80년 4월 사북 지역의 탄광 노동자들은 경찰을 사북읍 외각으로 내몰고, 그들의 요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자들의 힘은 광주 민중항쟁의 과정에서도 표출되었다. 운수노동자들과 서비스업계 노동자들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계엄군은 시민군들의 힘에 밀리기 시작했었다.
- 이를 목도한 국보위는 노동계를 사회정화운동의 주요 대상으로 상정하였고, 그것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일부세력(당시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사업장)을 삼청교육대로 격리시켰다.

## ⑥ 결론을 대신해서

-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당연

한 일이고, 그것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조치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확한 규명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역사의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미래 사회의 거울'을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4.3사건 진상규명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어 역사의 기억들을 더듬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들은 많은 지점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점, 조사권한의 한계점, 관련 자료의 보관문제, 관련자들의 비협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인종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역사적인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문제를 보다 확실한 조사권한, 예를 들면 '소환권, 수사권, 체포권'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과거 역사의 진실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였다. 그런데 그 진실은 남아공에서 더 이상 그러한 국가폭력을 이용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의 기억이자 미래의 기억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 가해자 형사처벌 가능하다

김 종 찬(언론인, 정치·경제평론가)

삼청교육 사건은 한국 역사의 각종 모순이 총집결된 결정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한상범 교수의 발표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특히 국민 전체를 이등병으로 보아 인격 말살을 시도하고, 불법적인 강제노역을 삼청교육의 주된 목표라고 지적한 점에 동의한다.

그러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건이 엄청난 만큼 사실 개입 세력도 엄청나다. 그중에서 경찰의 조직적인 범행과 법무부의 계획적 범행이 단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관행처럼 국방부에만 관심이 집중됐던 것도 편견중 하나이다.

삼청계획 5호는 당시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등 3개 행정부가 조직적으로 '인종청소'를 자행한 사건이다. 그들이 이름붙이기를 '불량배 청소'라는 것인데 처음부터 그들 모의자들은 '불량배는 인종적으로 말살시켜야 한다'는 집단 편견을 갖고 있었다. 이들에게서 '불량배'란 자신들이 볼 때 '미운 인간'들이다. 그런 '미운 인간'을 집단으로 학살하자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국회 조사특위 자료와 국방부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 의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한 사례로 삼청교육대에서 집단구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구타치자들에게는 형 선고와 더불어 '형집행 면제'라는 사면조치를 반드시 취해줬다. 사례를 보자.

제 2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81년 12월 28일 판결이 난 사건을 다음날인 12월 29일자로 '보통군법회의 관할관 소장 김국경'이 '형의 집행을 면제함'이라고 다시 판결하는 형태이다.

가혹한 폭행 치사는 판결문에서 조차 어느정도 나타난다. 이중 범죄 사실을 읊겨본다.

‘피고인 소위 윤익세는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결정처분을 받고 소속대에 수용되어 감호집행중인 감호생 소대장, 동 중사 노찬호, 동 중사 주태식은 위

감호생 지도관, 동 병장 박병모, 동 허칠선, 동 김희찬은 소속대 경계병으로 근무하던자들로서 공동으로,

1981. 11. 2. 14:00경부터 동일 18: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감호생 탁중진이 내무생활 태도가 불량하고 지시에 반항한다는 이유로 소속대 중대장 공소외 대위 정명수로부터 군기교육을 시키라는 지시에 따라 위 윤익세는 위 피해자를 소속대 감호소 구기교육장으로 데리고 가서 무게 약 180키로그램인 목봉의 한쪽 끝부분을 어깨에 메고 서있는 일명 특수교육이라 불리는 군기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위 피해자가 위 교육중 위 목봉을 내던지고 부근의 윤형 철조망으로 뛰어들고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하게 반항하자 위 박병모는 전투화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위 허칠선은 전투화로 동인의 하퇴부를 4-5회 각 차고 공소외 안창기와 같이 피해자의 양손목을 녹끈으로(증제1호) 위 목봉에 묶고 목봉을 가슴안으로 넣고 세운다음 도복끈(증제 2호) 입을 묶은 다음 계속 군기 교육을 시키던중 피해자가 힘에 겨워 목봉을 안고 쓰러진 것을 위 허칠선이 목봉위에 올라가 2회 굴려 피해자가 실신하게되자 동인의 얼굴위에 물을 붉고 다시 동인을 일으켜, 위 김희찬이 동인의 옆구리를 전투화발로 2회 폭행하고 다시 쓰러지자 위 김희찬, 위 노찬호, 위 주태식은 각 목봉위에 올라가 각 7회, 3회, 3회씩 구르고 다시 군기교육을 시키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위 윤익세가 '일어나라'면서 전투화 발로 피해자 둔부를 2회 차고 위 목봉위에 올라가 2회 구르고 다시 위 주태식, 박병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3회씩 굴려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오자 혀를 깨물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위 박병모는 돌을(증제 3호) 집어 넣고 끈 (증제 4호)으로 다시 입을 묶어 놓는 등 폭행을 가하여 같은 날 18:30경 병원으로 후송도중 위 군기교육교육도 중 입은 좌측폐허탈 및 양측흉부피하기종, 하악골골절, 장간막출혈 등으로 그 시경 동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들의 '폭행치사죄'에 대한 판결은 소위 “이건 범행이 평소 과격한 피해자의 반항과 욕설을 시정하겠다는 의도에서 저질려진 범행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로 시작된다. 그래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소위 윤익세는 별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다음날 군법회의 관할관 소장은 별지 확인서에 “형의 집행을 면제함”이라고 판결하고 서명한다.

검찰의 기소장은 더욱 이상하다. 증거물로는 목봉과 물동이 전투화 등 직접적 가해무기 등은 전혀 채택치 않았다. 그러면서도 녹끈(증제 1호), 도복끈(증제 2호) 새끼줄(증제 4호) 등이 누가 어떻게 준비하여 피해자의 입안을 묶었는지 등도 조사하지 않고 기소장에 적지도 않았다. 물론 현장 검증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어떤 증거도 채택치 않았다. 아울러 당시 교육생들에 의한 증언이나 참고인 진술 등은 모두 생략했다.

간단히 말해 공모 사실이 없는 '공모·범행'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시한 중대장 대위 김명수는 기소하지도 않았고, 진술조서를 받지도 않았다.

그리고 집단 구타라기 보다는 조직적인 고문 학살에 해당되는 상황을 범죄사실에 명백히 기록하고 이를 판결의 증거로 삼고서도 곧장 '형집행 정지'를 판결하고 있다. 그것도 군법회의 직후 다음날, 마치 대통령이 사면하듯이 사면조치 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아예 군 검찰이 집단구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내린 숱한 사례를 통해 보다 정당화된다. 이는 당시 '죽여도 좋다' '때려 죽이고, 않죽으면 나가서 3년안에 죽게하라'는 등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는 배경을 정당화시킨다. 교육중에 민간인을 '죽여도 좋다'는 암묵적 묵시가 없었다면 이런 형태로 가해자들이 잔혹스럽지도 않을 것이며, 기소유예 같은 면죄부 남용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실 삼청계획 5호는 불법 덩어리이다. 국보위가 입안하여 집행한 삼청계획 5호는 당시 계엄법 시행령 제 7조에 명기된 되로 국채 해당되며 이 경우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법조항을 위배했다. 즉 국채 사항이면서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도 않았다. 이 경우는 삼청계획 5호의 적법성에 치명적이다.

또한 계엄사령부가 예하부대에 '불량배 소탕 및 정화계획'을 시달한 날자는 80년 7월 3일자이고, 국보위가 '불량배 소탕계획'을 공문으로 보낸 날자는 7월 29일이다. 이 역시 불법의 증거가 된다.

이 경우 연행자들은 모두 불법 연행이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불량배'라는 낙인을 찍어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이들은 군부대에 불법 감금하고 앞에서와 같은 조직적인 고문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아울러 강제 날인을 통해 '근로봉사대 자원서'를 만들어냈다. 이 또한 '자원날인 거부면 군법회의 회부 또는 검찰 송치'라는 강요를 앞세워 받아낸 것이다.(이 부분은 지난 9월 15일 서울지

법 민사항소 1부에서 신군부에 헌납한 1000억 원대의 땅을 돌려달라는 김치열 전법무부 장관의 반환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 불법에 의한 날인이 무효화되는 길을 마련했다)

당시의 강제노역은 정부가 민간인들을 강제 구금하여 가혹행위를 통해 만들어낸 전형적인 사례이다. 벌률에 보장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두 가지를 어겼다.

80년 당시 불량배에 의한 피해 사례가 없었는데도 신군부를 그 피해를 앞세워 민간인에게 법적 처벌을 가한 것이다. 정식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형사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기소장을 당사자에게 변론 기회를 주지 않고 사회정화위원회라는 이름의 법정에서 실형을 언도한 것이다. 사회정화위원회는 대개 경찰서장이 위원장이 되고, 정보과 형사가 간사가 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는 내무부가 조직적으로 삼청계획 5호에 가담한 증거가 된다. 이때 이를 위해 검찰이 그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된다. 즉 사회정화위원회에서 넘어온 사건을 법률이란 이름으로 달아 처벌하는 역할을 자행한 것이다.

맨 처음 영장없이 체포하여 사회정화위원회에서 심리없이 재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증거는 오직 경찰의 정보보고이고 본인에게는 강압에 의해 자인서에 대해 인장을 받는 수순으로 궐석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이 전과정에 대해 합법화 작업을 벌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법무부 검사와 서울지검의 검사 20여명이 1만288명(순화교육생 2,710명+근로봉사자 7,578명) 중 7,578명에 대해 보호감호처분을 매겼다. 사회보호위원회는 법무부 산하 기구이고, 이를 검사들은 보호감호 시설이 없는데도 보호감호 처분을 내리고 그들 7천여명을 동원해 보호감호 시설 공사에 강제노역을 시켰다. 물론 그들 중 대다수는 군부대에 순화교육 명부등으로 계속 붙들어 뒀고, 거기에서 가혹행위를 목격한 감호처분생들이 '정식 재판 요구'를 주장하다가 군인들이 쏜 총과 군화발에 30여명이 죽었다.

정식 재판에 의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재판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5공화국 헌법에는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이들 근로봉사대는 군사재판에 회부된다는 협박에 의해 강제로 근로봉사를 자원한 경우가 많아 검찰이 조직적으로 강제노역이라는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노역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들 7천여명의 노역자들은 정부와 검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 사실은 시효에 대한 문제이다. 국가로 부터의 피해 규정이 '3년'으로 못박혀 있지만, 이 사건은 피해를 알 길을 차단당한 전형적 사례에 해당된다. 근로봉사 처분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정부가 이를 은닉했기 때문에 검사 개인에게 그 청구가 가능하다. 정부가 처분에 가담한 검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추진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을 불법 감금해 군부대에서 강제노역을 통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본 국방부와 정부가 강제 노역자 개인에게 배상을 하던가 모두가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검사에 대한 손배소는 사회보호법이 80년 12월 18일 제정됐는데, 법제정 이전에 보호 감호 처분을 내린 경우에 집중될 수 있다. 관련법규도 없는데 처분이 먼저 내려지고 강제노역을 시켰기 때문이다. 5공화국 헌법은 계엄하에서도 비상계엄에서는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만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어 삼청교육생에 대한 강제노역 특별조치는 계엄법 위반이다. 또 사회보호법은 사후 입법으로 형법을 소급적용하여 법무부가 불법 행위를 한 사회보호법은 사후 입법으로 형법을 소급적용하여 법무부가 불법 행위를 선도한 것이다.

시효에서 더욱 주목거리는 이들 순화교육생(삼청교육대 수료생)이 강제소집 되고 나서 단 한차례도 '소집해제'를 공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군부대를 나설 때 특별 신분증을 부여했다. 여기에는 "1, 반드시 항상 소지할 것 3, 재범시에는 엄중처단함" 등을 명기하고 있어 그 신분이 군부대를 나선 이후에도 유호하고 있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이때 '엄중처단'은 가중처벌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삼청교육대로 순화교육 대상자의 신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 입소 교육 이 신분의 시작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구속하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애초 분류를 담당했던 법무부 사회정화위원회의 분류 방식이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애초 삼청교육대에 보내어져 순화교육을 받은 39,742명에 대해 분류 심사를 해서 A급 3,170명 군재회부, B급 10,016명 근로봉사, CD급 26,550명 퇴소라는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때 CD급에 대해 수료증이라는 특수 신분증을 부여했는데, 이런 신분 부여는 다른급 분류자가 1년이 넘게 장기 근로봉사를 하는 특수신분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가, 법적으로는 동일한 신분을 부여한 것이다.

다시 말해 '퇴소'로 신분 제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특수 신분이 살아 남아 있도록 하므로써 '삼청계획 5호' 정책이 지속되게 만들려 했던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들 수료생 모두에게 주민등록 등본에 '순화교육자'라는 스템프를 찍어 전과기록 처럼 관리한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근거이다.

다구나 법무부는 이런 특수 신분이 지속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송감호소 설치이다. 이를 위해 벌어진 일은 끔찍하다. 얼마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죽음으로 규정되어 소동을 빚은 청송감호소 박영두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는 전과기록을 말소해준다는 펜에 바쳐 삼청교육대에 갔다가(80년 여름), 단기 교육이 끝나고 다시 근로봉사대로 분류되어 장기 수료생이 되었다. 81년 10월 '가혹행위 근절' '정식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로 군 연병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무참하게 얻어맞고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청송감호소에 수감됐다. 그는 여기에서 보호감호 철폐를 주장했고, 84년 10월 의무가 치료를 요구하다가 마침내 징벌방에서 교도관들이 잔혹스런 집단구타로 피똥을 싸고 사망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

이 사건을 굳이 군법회의에서 구타살인을 저지른 군인들을 형집행을 면제해 준 것과 대비할 필요조차 없이, 민간인을 아직 간교하게 '가중처벌'이라는 처벌 구조를 적용하여 사망에 까지 이르게 만드는 삼청계획 5호의 본질에 접하게 된다. 이렇게 앞뒤가 뒤바뀌게하여 조직적으로 특수 인종(폭력배 청소)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종청소'이고 '집단학살'이라 부른다. 이를 자행한 정부가 그 진상을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거 은닉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할 때, 이는 물론 국제전범재판소에서 기소 대상이다.

이 사건은 삼청교육생으로 처음 분류됐던 4만여명이 아직도 삼청교육생의 신분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정부에 의한 증거 은닉은 정부가 그런 인종청소 프로그램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과 같으며, 비롯 사회정화위원회가 법무부에서 없어진 부서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 조치에 대해 종결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법적 구조가 보다 상세히 다뤄질길 기대해 본다.

## 1980년 삼청교육대 인권침해사건과 해결방안

이 철호(여수공업대학 경찰행정과 교수)

### I. 서언

일명 「삼청교육대(三淸教育隊)사건」이라 불리며, 80년대 한국사회 최대의 인권유린사건으로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악일소를 위한 특별조치의 방침에 따라 각종 사회악사범과 시국사범, 무고한 시민 등을 마구잡이로 검거하여 순화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군부대내에 가혹한 훈련을 받게 하여 다수의 학생자를 낸 것을 말한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광주 항쟁 유혈진압과 함께 1980년 정권을 불법적으로 찬탈한 신군부가 저지른 가장 야만적인 인권탄압 사례이다. '깡패 순화'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몇 달씩 혹독한 구타와 고문을 일삼았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8월 4일 각종 사회악을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정화하여 사회개혁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사회악일소 특별조치」를 발표하여 폭력·사기·마약밀수사범에 대한 일제검거령을 내리고 계엄사를 포고령 제13호로 이를 시행하였다. 이 포고령에 따라 1981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4차에 걸쳐 6만755명이 검거되어, 검사·경찰서장·보안사 요원·중앙정보부 요원·헌병대 요원·지역정화위원에 의해 A·B·C·D 4등급으로 분류되어,<sup>1)</sup> A급 3,252명은 군법회의에 회부되고, B급과 C급 3만 9,786명

1) A급은 조직폭력·공갈·치기배의 수괴 또는 중간간부급, 상습폭력배 중 폭력 實刑前科 2범 이상, 기타 흉기소지 극악한 자, 강도·절도·밀수·마약의 현행범등으로 이들을 구속하여 軍裁회부 또는 검찰에 송치하였고, B급은 조직폭력·공갈치기배의 행동대원, 기타 경제·정치폭력배, 상습도박·사기꾼·폭력우범자, 강도·절도·밀수·마약 전과자로서 再犯의 위험성이 있는 자와 가타 이에 준하는 자 등으로 軍部隊에 인계하여 4주간 '순화교육' 후 6개월마다 본인의 죄질 및 改過遷善의 정도를 참작, 재심사 분류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고, C급은 폭력사실이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죄자와 B급 해당자중에서 정상이 참작된 자로서 군부대에서 醇化教育 후 사회에 복귀, D급은 초범으로 극히 사안이 경미하고 정상적인 학생이나 소년으로 직업과 거주가 일정하여 改悛의 情이 현

은 4주교육 후 6개월 노역, 2주교육 후 훈방에 각각 처해졌으며 D급 1만 7,717명은 경찰에서 훈방되었다.

삼청교육대의 피해자들이 1988년 8월 5일 「삼청교육대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함으로써 1988년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었고, 이때 국방부는 5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발표해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 상정됐던 삼청교육보상 특별법은 10년을 끌다가 결국 통과가 안 됐다. 법원에 낸 보상소송들은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 들어와 지난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으나, 삼청교육대 피해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sup>2)</sup>

### II. 삼청교육대 설치와 운영의 위법성

#### 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신군부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은 「정부조직법」과 「계엄법」이다.

정부조직법 제5조는 "행정기관에서는 그 소관업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시설, 연구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서는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단 전국을 계엄 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11조)",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함에 즈음하여 국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에 부의하여

저하고 再犯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서약과 후견인의 보증으로 받고 훈방하였다(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國保委白書』, 1980, 41~42면 참조).

2) 한겨레신문, 2001년 8월 11일, 4면 사설 참조.

야 하며 각 부처의 소관사무 중 주요한 사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주관부처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계엄법시행령 제7조).

위와 같이 정부조직법과 계엄법에 근거하여 신군부는 대통령령(大統領令) 제9897호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설치령」을 제정하였다. 同 設置령의 주요 조문은 아래와 같다.

"비상계엄하에서 계엄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업무를 지휘 감독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동 설치령 제1조).

"비상대책위의 위임에 따라 제1조에 규정된 사항의 기획과 집행의 조정 및 통제를 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동 설치령 제4조).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분장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그 분장사무는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동 설치령 제6조).

## 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위헌성

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그들의 손으로 작성한 소위 [국보위 백서]에서 '國保委와 憲政發展'이라는 제목하에 국보위가 헌정발전에 공헌했다고 스스로 자화 자찬하고 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으로 계엄사령부가 치안과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안정을 회복하고 북한집단의 책동을 봉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과감한 사회정화를 통해 비능률, 부조리, 불신풍조를 제거하고 국가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새 시대 새 역사 창조의 초석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국보위의 설치는 행정부와 戒嚴司, 그리고 國保委가 혼연일체가 된 가운데 國法의 테두리 내에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일체의 부조리와 사회악을 척결함으로써 새로운 국가질서와 청신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고 국가안보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보위의 제반 조치를 통해 정치·경제·사회에 잠재하고 있던 부정적 요소들이 제거됨으로써 정부와 국민, 도시와 농촌, 기업인과 근로자 등 상호간의 반목과 불신이 사라지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중략 …… 국보위가 설치되어 국가보위와 국민의 생존권 수호, 그리고,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의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개혁을 단행한 것은 우리의 착실한 정치발전과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서도 매우 긴요한 일이며, 바로 여기에 국보위가 우리나라 憲政發展에 기여한 참된 意義가 있는 것이다."<sup>3)</sup>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공직자숙청, 언론인 해직, 언론통폐합 등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헌법기관인 행정각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켰다. 특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는 불과 2회만 형식적으로 개최되었을 뿐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상임위원회 아래 내각과 비슷한 1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였고, 앞에서 살펴 본 공무원 숙정·삼청교육·사회정화조치 등은 계엄업무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행정업무로 보여진다. 또한, 전두환 사령관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취임 직후 헌법개정안 요강을 작성, 정권을 장악할 경우의 권력구조 등을 검토했다. 결국 이 위원회는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한 비상기구보다는 행정 각부를 통제하는 권력기구로 운영함으로써 전두환이 국정의 주도자임을内外에 과시하는데 이용됐다고 할 수 있다.<sup>4)</sup> 따라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한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국헌문란(國憲紊亂)에 해당한다.<sup>5)</sup>

## 3. 삼청교육대 설치·운영의 위법성

삼청교육의 운영은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 등을 위반한 위헌·위법의 행위였다는 것이다.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강제노역의 부과, 영장제도, 가혹행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중심으로 삼청교육대의 설치와 운영의

3)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國保委 白書』, 17~19면 참조.

4) 김영수, 『韓國憲法史』, 박영사(2000), 629면.

5) 大判 96도3376.

위법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 (1) '법에 절차'에 위반한 불법적 검거

삼청교육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삼청교육의 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검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소명(疏明)할 수 있는 반론권(反論權)이 전혀 부여되어 있지 않았으며, 군부대입소 후 가혹행위로 인해 인권을 유린하였다는 점이다.

19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악일소를 위한 특별조치'가 발표된 직후 전국 각지에서는 계엄군과 경찰이 행인들을 검문하여 문신이나 전과가 있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당시 각 경찰서에는 할당량이 배정되어 있었고, 그 결과 경찰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별의별 트집을 다 잡아 사람들을 연행해 갔다.<sup>6)</sup>

#### (2)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것으로 다루어져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원칙이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단지, 전과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潛在的 犯罪者) 취급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다.

#### (3) 「강제노역의 부과」의 문제

강제노역이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역을 강요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각 나라에서 강제 노역이라고 한다면 형벌의 일환으로서 부과하는 것이다. 형벌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노역이란, 병역을 제외하면 지방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역(賦役)이나, 형사정책적인 수단으로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과하는 노역이 있다. 형벌의 선고가 없이 법률의 운영에서 관리가 임의로 재량권을 발동하여 노역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시민의 법을 생활에 적지 않은 불안을 안겨 주는 것이라고 함은 말할 것도 없다.<sup>7)</sup>

6)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돌베개(2000), 76면.

7) 한상범, 『기본적 인권』, 정음사(1985), 140면.

삼청교육대의 강제노역 부과는 법률에 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4)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재판을 받을 권리는 1215년 영국의 Magna Carta 이후 권리청원 등에서 그 시원(始源)을 찾아 볼 수 있지만, 헌법적 차원에서 이를 성문화 한 것은 1791년 프랑스헌법이며 미연방수정헌법 제6조 등 각국 헌법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재판청구권은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국가에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 함은,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와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는 적법절차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규율되는 재판'으로 피고인의 방어활동이 충분히 보장되고, 실질적 당사자 대등이 이루어진 공정한 재판을 의미한다(1997.11.27. 90헌마60).

삼청교육대사건은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개인이나 지역유지(地域有志) 등과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모략증상 등으로 사회정화위원회의 밀고를 받거나, 전과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권력찬탈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신군부 세력 그들이 만든 심사분류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하여 군부대에서 형벌 아닌 형벌을 집행하고, 인격모독과 체벌, 강제노역을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한 것이다.

#### (5)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침해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다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신군부는 그들이 마련한 분류심사기준에 따라 군 · 경찰 · 경찰 · 지방유지(地方有志)로 합심제(合審制)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분류하였다. A급의 경우, 군재회부 또는 경찰에 송치하였는 바, 전과2번 이상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의 방식으로 처벌한 것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 법리와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1980년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자신들의 권력찬탈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행한 삼청교육캠프의 운영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무엇으로도 법적으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 III. 삼청교육 피해자의 구제방안

#### 1. 책임자 처벌

삼청교육의 피해자가 범죄인들이 아니라, 민주헌정을 군화발로 찬탈한 신군부가 범법자이고,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 선량한 시민들을 잡아다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가정을 파괴한 것이 이들이 범죄자들이다.

삼청교육의 주동자와 그 하수인들은 구국의 충정(?)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언제까지 신군부세력이 '먹으로 쓴 거짓말'을 방치할 것인가?

1980년 삼청교육을 계획·기안하고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가슴에 맷힌 응어리를 풀 수 있다.

#### 2.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가 인권을 유린하고, 삼청교육대의 인간개조(?)프로그램에 의해 교육(?)후에는 사회정화위원회라는 감시·밀고 기구를 통하여 감시통제하는 등 인격적인 모욕과 이웃으로부터 불한당(不汗黨)취급·백안시(白眼視)당하고 심지어 가정이 박살나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한 전 단계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 3. 「시효제도」 배제법리」와 특별법제정

최근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과 관련해 '국가가 피

해보상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데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1년 7월 11일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삼청교육 피해자인 김아무개씨 등 5명이 낸 소송에서 1980년 교육피해에 대해서는 청구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하면서도, "정부가 대통령 담화를 통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1인당 1000만~1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sup>8)</sup>

형식적 법해석, 시효법리로는 1980년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는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한 1981년 1월 이후에는 강박상태가 종료되었고 정상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판결(대판 1992.8.14, 92다29811; 대판 1996.10.11, 95다1460판결 등)을 고수함으로 인해서 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비롯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막혀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국가조직이 관여하거나 다수 범죄자가 가담한 불법 행위에 대해 도저히 구제를 청구할 수 없었던 신군부세력 지배하의 5공화국의 강압적 분위기를 완전히 간과한 형식적인 판결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sup>9)</sup>

대법원의 이같은 시효법리적용의 법해석과 판결은 국제인권침해에도 위배된다. 주아네보고서는 시효와 관련하여, (1) 인권을 침해한 국가의 형사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중에는 시효가 정지된다. (2) 반인도적 범죄나 전쟁범죄 등의 중대 범죄에 대하여는 시효적용이 배제된다. (3) 중대 인권침해에 대한 민사배상청구에도 시효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신군부(新軍部) 세력이 군사반란과 내란을 저지른 중죄인(重罪人)이라는 것은 김영삼 정부 하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한 것에서 증명되고 있다.<sup>10)</sup> 그리고,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헌정질서 파괴 및 집단살해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배제의 법리나 연장의 입법을 통해서 삼청교육대 피해자 구제를 명예회복과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8) 한겨레신문, 2001년 7월 12일, 15면; 한겨레신문, 2001년 8월 10일, 15면 참조.

9) 한인섭, 『한국형사법과 법의지배』, 한울(1998), 190면.

10) 대판 1997.4.17, 96도3376 참조.

## 피해자 증언

### ◎ 피해자 증언 (1)

- 이연수 목사(구로구 개봉1동 61-1호)

### ◎ 피해자 증언 (2)

- 심영선(성동구 마장동 459-10)

## 삼청교육대 피해자 증언 (1)

본인이 삼청교육대와 균로봉사대에 있으면서 군인들에게 당하고 본 것을 말씀드리면,

### (삼청교육장에서 공수군인들이 저지른 만행들)

1. 삼청교육대 입소시에는 마을을 지나면서 산에서는 연병장 까지 포복으로 기어 가게하여 기압으로 시작하였다.
2. 도착하여 공수군인(조교)들의 말에 의하면-“전두환 대통령께서 공수부대군인들을 시켜 만들어진 이 박달봉은 우리들에게 전 대통령이 직접 하사하신 하사봉이다”라고 말하였음.
3. 또 조교가 말하기를“이 하사봉으로 너희들을 때려서 죽게하고 죽지않는놈은 나가서 3개월내에 죽게하고, 최고 1-2년안에 다 죽도록 골병들게 하라” 하셨다. 고 말하면서,
4. 그 하사봉이라는 박달나무로 마구 때리며‘군화발로 짓밟고 닥치는 대로 혹독한 횡포와 두들겨 패기 시작하였다.
5. 훈련장에는 곳곳에다 구덩이를 파놓고 그 구덩이에 소변을 하게 하고 그 소변한 구덩이에 머리를 박으라고 하였다.

위의 일은 입소후 시작하여 퇴소할 때까지 하라고 하였다.

### (삼청근로 봉사대에서 공수군인들이 저지른 만행들)

1. 조용훈 하사가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손들라고 하여서 본인이 손들자 기도하게 하여놓고 내무반에 오라고 하여 가니 “하나님이 너 보고 여기 들어가냐고 하더냐?고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구타를 당했음.
2. 매일 밤이면 점호시간에 침상밑에 쥐잡기 기압, 침상에서 땅에 머리 쳐박기 기압, 그때마다 조용훈 하사는 본인을 구타하면서 자기 고모가 예수 믿으면서 위선자였다고 하면서, 한주일에 3-4회는 조용훈하사 고모와의 갈등

을 나에게 분풀이하여 퇴소까지 이런 이유로 두들겨 맞았다.

3.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이기 때문에 10월달부터 굉장히 춥기 시작하는데 한주일에 3-4회는 팬티만 입고 뒤 연병장에 해쳐 모이라고 하고 모이면 양팔을 벌리게하여 황새가 날아가는 것 같아하고 있다가 앞으로 굴러 뒤로굴러해서 눈이 녹으면 흙탕물에 미끄러지처럼 물에 젖게하여 보통 2시간 이상 하였음.
4. 본인은 조용훈 하사에게 2시간 정도 꼭쟁이 자루로 구타를 당하고 기어서 자기가 신은 군화를 본인의 혀로 박으라고 하여서 그렇게 하였음.
5. 거기서 그 고통을 못 이기고 탈출한 대원을 잡아와서 얼마나 구타하였는지 장이 파열되어 대변을 줄줄흘리며 각 내무반에 다니며 자기 때문에 여러분께 고통을 주어 미안하다고 하며 지나가는데 대변을 줄줄 흘리다가 죽었음.
6. 흑석동에서 온 사람인데, 약 50대 가량되는데 제식 훈련받다 잘 못한다고 조용훈 하사와 공수 군인들이 참나무 몽둥이로 때려 그 자리에서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니까 엉깐다고 군화발로 차고해서 며칠있다가 결국 죽어서 백제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난후 식도가 막혀 죽었다고 허위로 진단을 띠었다고 소대장 중사가 말하였음.
7. 공수 군인들이 이야기 하기를 전두환 대통령께서 탈출하면 사살하라고 했으니 너희를 때려 죽이고 탈출하여 사살했다고 보고서만 내면 된다고 했다.
8. 바로 이들이 살인마들이고 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백정들이였다. 본인은 삼청교육장에서부터 삼청근로 봉사대까지 들어가면서 나올때까지 기합과 구타로 지내왔습니다.
9. 제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왜, 본인은 남성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최형균목사님께서 본인을 면회하려고 오셨지만 면회는 할수없고 목사니 설교를 부탁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이연수씨가 목사님을 보고 또한 목사님께서도 이연수씨를 볼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 최형균목사님께서 3번 오셔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맞아죽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최중사가 관악 경찰서와 추진위원들을 만나고 와서 저의 고통은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10. 여러분 전두환이 정부때는 자기마음에 안들면, 간첩이라고 죽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도둑놈 깡패를 만들어 죽이면서, 사람들이 자기도 당할까봐 전두환이에게 아부하고 그편을 들어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두환이 때 같이 삼청교육을 한번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는 무고한 사람들만 잡혀가고 도둑놈과 깡패들은 모두 다 숨었기 때문에 조용했던 것입니다.

본인은 김대중 대통령께 꼭 할말이 있습니다. 그때 삼청교육 피해자들을 모두 합치면 1-2십만 된다고 본인은 공수 군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까지 합하면 약 백만이 넘을 것입니다. 김대중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꼭 여러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신다고 하셨고 삼청교육피해자들, 그 가족들, 그 친척들이 김대통령께 표를 찍어 주어서 당선이 되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다음 민주당에는 그 피해자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꼭 명예회복을 시켜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1년 9월 28일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61-1호

이연수 목사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공동의장)

## 삼청교육대 피해자 증언 (2)

먼저 이글을 쓰기전에 죽은영혼에게 명복을빌고 불구가 되고 미친사람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980년 제가 당한 삼청학살 만행을 다 기억 할 수는 없지만 생각나는대로 이글을 간략하게 쓰고자 합니다. 제가 당한 삼청학살만행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그 즉석에서 맞아 병신되고 미치광이가 되는 것을 보았고, 이 피해자들이 죽지않고 살아 나왔으나, 오늘날 까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수모와 경멸의 대상으로 부끄러워하며 삼청교육수료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쓸수있다는 것은 하늘에 감사할 뿐입니다.

1980년 정확한 날자는 기억할수 없으나, 처음 붙들린 장소는 다방이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길음동 소재 영 다방에서 오후에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헌병과 경찰이 들어 닥치면서 아무 이유없이 나를 성북경찰서로 끌고 갔다. 유치장에 쳐넣어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잡혀와 있었다. 그들도 나처럼 아무영문도 모르고 끌려왔다고 하였다. 3일후 검찰이 불러내어 끌려 검사에게 가니 검사가 3주만 삼청교육받고 오라고 하였다.

나는 검사에게 ‘내가 왜? 무슨죄로 군부대에 가서 그런 교육을 받느냐?’고 하니, 검사는 아무 말도 하지않고 나를 밖으로 끌어내었다. 나는 다시 성북경찰서로 끌려와서 며칠을 보내고 거기있는 우리 일행을 포승줄로 묶여서 빼스 두차에 싫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호송차 안에는 헌병들이 같이 타고 우리들을 감시하였다. 그 헌병들이 우리들에게 머리를 바닥에 대라고 하였다. 우리는 머리를 바닥에 대고 기약없는 길을 가고 있었다. 도착하니 그곳은 원주 38사단이였다. 우리는 내리자 마자 짐승처럼 끌려다니면서 군화발로 채이고 개머리판으로 맞아가며 기어가다 싶이하며 연병장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연병장에서 머리를 깍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한 장교에게 연설을 들었다. 그 연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를 포기 하라는 내용이였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너무나 살벌하고 무서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날 저녁부터 두려움과 절망, 공포는 시작되

었다.

우리는 각방에 배치되면서, 혹독한 구타와 기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방 저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밤새도록 공수군인들에게 많은 구타와 기합으로 밤을 세웠다. 이튿날 아침에 우리는 신발을 신지 못하게 하고 맨발로 뛰어 다니라고하여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한참뛰고 나서 아침식사가 나왔는데 양이 너무나 작고 차가운 공수군인들의 눈초리를 받아가며, 삼청교육대에 끌려온 신세가 되어 하염없이 눈물이 앞을 가렸다.

식사후 우리는 연병장에 모였다, 교관들이 여전히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고 소리 질렀다. 우리는 봉을 매였다. 보통 5명에서 6명이 매였는데 그 봉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구령에 맞혀 움직였다. 한명이라도 힘이 빠지면 봉이 땅에 떨어졌다, 그때마다 공수군인들은 군화발과 개머리 판으로 우리들을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군인들이 인간이 아니었다. 아무리 명령개통에 있는 군인이라도 다 같은 한민족 내 나라 국민이 아닌가? 악몽같은 3주가 흘렀다. 그 3주의 고통은 글로 도저히 다표현할 수가 없다. 나의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더욱더 무서운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은 나 자신도 몰랐다. 군인들이 이리뛰고 저리뛰면서 우리들에게 호명하였다. 사회로 나갈 사람과 남아 있어야 할 사람을 구분 하였다.

나는 그 호명속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는 남아서 하루 저녁을 더 있었다. 다음날 아침부터 심의가 있었다. 그 심의판은 우리들을 A, B, C, 등급으로 나뉘었다, 나는 무슨 등급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기약할 수 없는 어쩌면 돌아 올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하였다. 다음날 우리는 포승 줄에 묶인체 또 머리를 밖고 있으라기에 밖을 볼수가 없으니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날씨는 몹시 추웠다, 우리는 내리자 말자 군화발로 채이고 총과 곤봉으로 맞으며 개처럼 끌려 다녔다. 나는 한교관에게 끌려가서 물속에 들어 가라고 하여 물속에 들어가니 그래도 살을 애이는 듯 추운날씨이니 오히려 물속이 따뜻하였다. 나는 물속에서 나와 다시 봉을 매였다. 웃이 얼어서 얼음이 되어 돌맹이처럼 철그럭 철그럭 거렸다. 교관들은 빨간 모자를 쓴 상병과 일병이였고, 사방에서 총으로 무장하고 언제라도 우리들을 향하여 발포할수 있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깔려 있었다.

몇 시간 동안 훈련을 마치고 우리는 각각 천막에 배치 되었다, 배치되면서 내가 교관의 눈에 걸렸다. 군화발로 가슴 허리 머리를 맞았다, 나는 맞으면서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나는 기절 하였다, 깨여 보니 천막이 였고 여러 수련생이 나를 걱정하는 눈치로 쳐다 보았다. 그후 거기서 악몽같은 몇주일을 보냈다. 산에는 눈이 내렸다. 우리는 다시 거기서 분리되어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 그곳은 화학대대란 풋말이 붙어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악몽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였다. 전방에 날씨는 눈도 많이 오고 참으로 추웠다. 우리는 내리는 눈이 무서웠다. 눈을 쓸거나 치우는 일은 않고, 우리 모두 옷을 벗고 눈위로 굴러다녔다. 사람의 체온때문인지 눈은 녹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팬티바람 집합이라는 호령이 내려 우리는 자다말고 밖으로 나가 일렬로 서서 팔을 벌리고 있으면 군인들이 와서 우리 몸에 물을 끼얹었다. 그 물은 채찍과도 같이 우리몸을 때렸다. 채찍 보다 더 앞은 고통이였다. 몇 명은 눈속에 쳐 박혀 있었다. 나도 그중에 눈속에 들어가 있었다.

눈속에 들어가 있으니 오히려 바깥보다 따뜻하였다. 우리는 이장소에서 약 한달간 사역과 구타 눈이오면 뺀티만 입고 몸으로 구르고 며칠전너 한번씩 팬티만 입고 밤에 몇시간씩 추위에 떨어야 했다.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또다시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였다. 소수의 사람들로 나뉘어 졌다. 나는 5사단 36연대 2대대에 배치 되었다. 소대에 도착하니 우리와 같은 수련생들이 몇 명 더 와 있었다. 우리 소대원들은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어느 막사앞에 서 있었다. 그 막사 앞에서 5분쯤 기다리니까, 한 대위가 나오더니 '너희들이 앞으로 남아있을 형량을 각각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 하기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꼭 살아가리라, 고 마음먹었다. 몇 명의 호명이 끝나고 내 이름을 불렀다. 나의 형량은 1년이라고 하였다. 나는 금방다짐하던 마음이 없어지고 눈앞이 캄캄 하였다.

하루 하루 살아 가기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도 또 1년이라니 너무도 기가 막혔다. 정말 죽고 싶었다. 나는 첫날에 사역을 나가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상사에게 권총으로 머리를 맞고 기절을 하였다. 지금도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박종술 상사였다. 항상 권총을 차고 있었다. 가끔 5사단에 가서도 사역을 하였다. 그러한 생활속에서도 겨울은 지나고 봄은 찾아 왔다. 봄이 지나 초여름이 였을까? 우리는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아마 각 사방에서 흘어져 삼청교육 받던 사람들을 한곳에 모으는 것 같았다. 동서남북을 살펴보니 사방에 망루대에 기관총이 설치 되어 있었다. 언제라도 발사할수 있도록 사병 두명씩 기관총을 잡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서 온 것이 하늘의 뜻이

고 우리가 죽어나가는 수련생을 그간 7명이나 보았고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대우등… 우리는 대모를 하기로 의논하였다. 우리가 연병장에 모여 대모를 할 우려가 있다고 그들이 알고 한 대위가 나와서 수류탄을 던질려고 하였다. 다른 장교가 말렸다. 그날밤 우리들은 어머님 은혜란 노래를 부르며 정문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군인들이 처음에는 최루탄을 던졌다.

엄청 매웠으나 우리들은 꾹 참고 손에 손잡고 정문으로 향하였다. 그때에 군인들이 일제히 사격을 하였다. 처음 사격은 땅에 쏘았다. 나중에는 우리들을 향하여 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동서남북 망루대에서 기관총을 쏘았다. 나중에는 우리들을 향하여 쏘기 시작하였다. 여기 저기서 비명이 나오고 총에 맞은 사람들이 땅굴기 시작하였다. 나는 땅바닥을 기어서 필사적으로 막사안에 들어 갔다. 여전히 기관총은 우리들을 견주어 사격하였다. 내 앞에서 쓰러지는 사람 총을 맞고 쓰러지는 사람 전투 그 자체였다. 생지옥이였다. 밤은 지나가고 아침이 되어 죽은 시체들과 쓰러진 부상자들을 한트럭 싣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우리들은 알수가 없었다. 나는 밤이 맞도록 총을 맞은 땅바닥을 보니 전부 피바다가 되어 있었다. 내가 살아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하고 다시 다른 부대로 옮겨져 합류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 있었다. 어차피 이 생활이 이 판사판이므로 거기서도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부터는 사역은 시키지 않았다. 나는 뜻하지 않게 다른 수련생과 싸웠다. 두사람이 불려가서 나는 반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수련생은 반항한다고 어디론가 끌고 갔다.

며칠후에 그 수련생을 보았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수련생이 미쳐있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욕을 하고 다녔다. 바지에 오줌을 질질 사면서 다녔다. 그 수련생은 미친채로 나와같이 1년을 마치고 나왔다. 나는 그러한 죽음과 고통과 미친 사람들 속에 살아남아 집에 돌아온것이 하늘이 도우신 것 같다. 나올때는 이 사실을 비밀 지킬것과 입을 열어 발설시에는 모두 다시 잡아들인다고 다짐을 하였다. 들어갈때는 버스가 여러대가 갔는데 올때는 버스1대에도 차지 않았다. 다 죽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며, 어느덧 종로경찰서에 당도 하였다. 자유의 몸이 되어 집에 왔으나, 너무 많이 맞고 와서 정신적 공포에 시달려야 하였다. 매형이 하는 말이 매를 많이 맞은데는 말많이 맞은 곳은 오래된 똥물을 먹으면 좋다고 하여 한동안 똥물을 먹

었다. 몸은 병들고 다시 공포감에 쌓여서 신경정신과에 진찰을 하면서 삼청교육 사설을 말하지 못하였다. 만약 발설시에는 누군가 또 잡아갈것이라고 생각되어 두려웠다. 그냥 무섭고 가슴이 떨리고 죽을 것 같다고 하였다.

나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한곳에 오래 있을수가 없다. 삼청교육후부터 오늘날까지 정신과에 치료와 약으로 산다. 정말 우리나라에 다시 이런일은 없어야 된다고 다짐하며, 끝까지 명예회복에 힘쓰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미력이나마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죽은 영혼과 미친 사람들에게 명복을 빈다.

2001년 9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459-10

### 심영선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 사무처장)